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하여



저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페콘크리트와 페아스콘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자 종목을 혼합폐기물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허가종목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시설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에 건설폐재류로 통칭되는 페콘, 페아스콘,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는 처리가 가능하여 허가를 얻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혼합폐기물중에 기존의 파쇄기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폐벽지, 폐목재, 폐섬유,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질문 1. 그렇다면 허가를 득하고자 폐벽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것을 소각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각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폐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목재파쇄기를 설치하여야하는지, 폐유리를 중간처리하기위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하는지, 이하 각각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A 업체가 건설폐재류(페콘, 페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로 허가종목을 득 한후에 혼합폐기물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가능한 폐섬유, 폐목재, 폐벽지 등을 재활용처리업자와 위탁처리계약을 하여 위탁처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최종처리자인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에 위탁 또는 매립장으로 반입은 재위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만약 '질문2' 가 법에 명시된 재위탁금지조항에 저촉된다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의 종류를 전부 펼쳐놓고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처리가 불가(반입금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중 폐벽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유리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동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

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자가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폐기물배출자가 분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혼합건설폐기물을 수탁받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지 않고 타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것은 재위탁에 해당되며 폐기물에 대한 분리·선별은 중간처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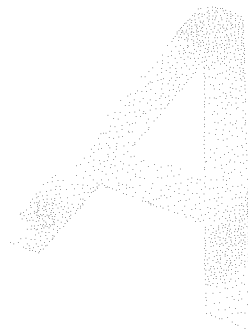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4.공통시설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 또한 비고1에 규정된 규모

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1마력짜리 연마시설이 사업장내에 10기가 있다면 전부를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합니까? 그럼 10기에 모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지만, 별표3의 비고1 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다른 예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의 경우 용적1m³이상의 탈지시설은 배출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업장내 용적1m³이상의 탈지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용적 0.02m³ 탈지시설 하나 추가시에도 비고1의 규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비고1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호 규정에 의거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사업장내에 1마력짜리 연마시설이 10기가 있어 규모이상에 해당된다면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며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지시설도 설치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이 사업장내 용적 1m³이상의 탈지시설이 설치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후 용적 0.02m³의 탈지시설 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설치되는 탈지시설의 규모가 같은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변경신고 및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50% 미만이고, 폐수중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인 경우에만 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단독정화조(부패탱크방식)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수행 여부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구간중 일부 구간이 변경되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기수행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재협의 구간 및 재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구간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협의 구간은 별도 분리발주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를 선정, 별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한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종합적인 검토·분석 등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기 수행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재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오·폐수병합처리 가능여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1조에 요구하는 오·폐수병합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오수량이 폐수발생량의 50%이내(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안됨)인 사업장에서 오수를 별도의 처리시설(부패탱크방식)을 설치한 후 폐수처리장에 유입(이유:처리효율향상) 오·폐수공동 처리하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면 저촉되는 관련법조항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유보



당사는 폐기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착대상사업장입니다.

2006년4월 방지시설을 폐쇄예정계획으로 신고하였으며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지시설 폐쇄조건으로 부착유예를 받아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자체 주주들의 회의결과 계획이 변동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6년 6월 30일까지 가동후 방지시설 사용을 중지,폐쇄하고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에 맞추어 다시 재설치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바목)에 의거 굴뚝자동측정기의 부착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방지시설 폐쇄의 경우는 불가하며 배출시설을 6월 이내에 폐쇄할 계획인 경우 인정되는 사항이며 만약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폐쇄예정으로 보고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부착이 면제 된 시설로서 6월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 나목 (1) (가)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폐수배출시설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관련



사업주 본인이 폐수배출시설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지시설의 등록에 관계없이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자가 방지시설등록업을 득하지 아

니하고 폐수배출시설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등록을 한자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되어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산적력계 부착



법 내용을 보면 부착대상중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적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은 부착에서 제외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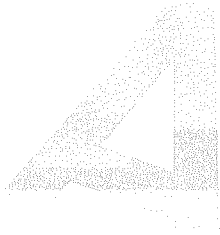
그런데 부착방법 중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積算)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만약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 2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떠한 건가요?

만약 이런 경우는 따로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산적력계 부착 대상시설 및 방법중 제1항 나호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일한 전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도 동시에 가동되며 방지시설에 별도의 전원차단



장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별표 제2항에서는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사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사설의 전력사용량을 2배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시설과는 별도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7톤/일)를 공동방지사설에 유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득한 당사가 수행해야 할 인허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항목



당사는 산업폐기물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로서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배출허용기준(제12조관련) 중 TMS전송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항목을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자가측정항목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TMS전송항목을 제외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이화학시험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폐수를 공동방지사설에 유입처리하고자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공동방지사설의 설치·변경)에 따라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수처리장에서의 처리가 가능한지



김치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추 및 무 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식물성 잔재물로분류가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양이 너무 과다하여 이를 감량화하기 위해 파쇄기로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폐수처리장이 있을시 폐수처리장으로의 유입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침출수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으로의 유입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배출시설 추가에 따른 인허가의 종류



당사는 도로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제조시설(243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0.8톤/일)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필증을 득한 업체로서 금번에 이화학시험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본 이화학시험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



귀하가 문의한 배추 및 무의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과정에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은 폐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가능하며, 아울러 기 허가(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폐수증가량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